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020
----------	-------

발의연월일 : 2025. 9. 16.

발 의 자 : 김병기 · 최혁진 · 김문수
윤종균 · 채현일 · 박홍배
조인철 · 전진숙 · 박지원
김동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사원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을 게을리 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감사원의 징계 요구권 행사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감사원의 권한 남용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음.

이에 감사원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 소속 장관 등에게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감사원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후단 신설).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2조(징계 요구 등) ①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32조(징계 요구 등) ① ----- ----- ----- ----- ----- ----- ----- ----- ----- ----- ------. 이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 ⑪ (생략)	② ~ ⑪ (현행과 같음)